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광해방지기술인 세부 자격기준 신설(안 제1조의2 및 안 별표 1)

가. 개정 이유

-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인정 및 관리를 위해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·경력 등을 기초로 한 경력 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 규정

나. 개정 내용

-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을 구분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'별표 1'을 신설하여 그 등급별 세부기준을 마련(안 제1조의2 제1항)
- 2022. 6. 16. 시행 예정인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(제 18270호, 2021. 6. 15. 공포) 제2조 제8호 나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'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'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 제2항)
- 광해방지기술인의 종류, 등급 및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(별표 1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효율적·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광해방지분야 기술인력의 권익 보호
- 기술인력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 부실시공 방지 등의 효과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등(안 제17조제1항 및 안 별표 2)

가. 개정 이유

-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자간 완전 경쟁을 유도하고, 신규 창업지원,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·보완

나. 개정 내용

-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은 감리사업을 제외한 6개의 전문분야 중 3개 이내의 전문분야를 겸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 완전경쟁을 제한하여 왔으나, 해당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(공정위 권고사항)
- 현행 산림·토지복구사업분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자연생태복원, 조경분야 자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창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확대 지원(국조실 권고사항)
- 타법 개정사항(건설기술관리법→건설기술진흥법) 반영(법제처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경쟁제한적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(안 제22조의2 및 안 별표 4)

가. 개정 이유

-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를 규정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

나. 개정 내용

-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해당 행정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및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을 별표 4로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권리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산정·부과·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규정 신설(안 제25조제5항)

가. 개정 이유

- 현재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15호)에 규정되어 있으나, 상위법령에 해당 고시에 관한 위임 근거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개선

나. 개정 내용

- 영 제25조제5항으로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의 산정·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의 위임 근거규정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의 산정·부과·징수 관련 세부사항이 고시에 위임된다는 내용을 법령 수준에 명시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고 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천재지변 등 재해상황 시 부담금 납부 관련 구제장치 도입(안 제26조제4항)

가. 개정 이유

- 천재지변 등의 재해상황 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원금이나 연체금 부담을 일정수준 완화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법제화하여 공공책무 강화(국민권익위 권고사항)

나. 개정 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부담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수범자에게 책임이 없는 천재지변 등 재해상황 발생 시 부담금(원금, 연체금)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국민 편의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등(안 제38조)

가. 개정 이유

- 법 제46조제2항이 신설되어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, 위탁 업무의 내용, 위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

나. 개정 내용

- 영 제38조제1항과 제2항의 위임 근거규정을 '법 제46조'에서 '법 제46조 제1항'으로 수정
- 영 제38조제3항을 신설하여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효율적·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광해방지분야 기술인력의 권익 보호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2 제1호의2, 제2호의2)

가. 개정 이유

-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신고인·신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

*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법령 등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근거를 갖출 것이 요구됨

나. 개정 내용

-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영 제38조의2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(안 제38조의2 제1호의2)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에 관한 사무(안 제38조의2 제2호의2)를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8.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변경 및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(안 제39조, 안 별표 6)

가. 개정 이유

- 종전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“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(한국광해광업공단)을 검사할 것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”가 규정되어 있으나, 법 개정(21.3.9)으로 인해 법 제42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 개정 필요
- 법 제49조제1항이 “법 제13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”고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
-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에 있어 과거 누적된 위반차수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(국민권익위 권고사항)

나. 개정 내용

- 종전 별표 4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인 ‘법 제42조제3항’ 위반의 경우를 ‘법 제13조의2제4항’ 위반의 경우로 변경하되, 그 세부 과태료 금액기준은 유지
-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(종전 별표 4 제1호 가목)에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“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 한다”는 내용의 기준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누적회차 적용기준 마련으로 과잉행정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9. 별표 신설에 따른 종전 별표 순번 등 개정

가. 개정 이유

- '별표 1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'과 '별표 4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'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별표의 순번 및 제목의 조정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종전 '별표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'을 '별표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'으로 개정하여 순번을 조정하고 제목에 띄어쓰기 반영(안 제16조, 제17조제1항, 제19조제1항, 제38조의3제1항, 안 별표 2)
- 종전 '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'을 '별표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'으로 개정하여 순번을 조정하고, 제목을 수정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19조제3항, 안 별표 3)
- 종전 '별표 3'을 '별표 5'로 순번 조정(안 제25조제1항, 안 별표 5)
- 종전 '별표 4'를 '별표 6'으로 순번 조정(안 제39조, 안 별표 6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별표 신설에 따른 조문 간 충돌, 혼선 방지 및 내용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